

『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』

정관 개정 사항 보고

□ 관련 근거

-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②항
(정관 변경시 시장 인가 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)

□ 개정 사유

-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 반영을 통한 노사의 경영성과와 책임 공유 제도화에 필요한 근로이사제의 도입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- 반복되는 공공부문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는 안전업무 외주화를 이사회 의사결정사항으로 명문화하여 시민과 근로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고자 함

□ 개정 절차

- 이사회 의결('16.10.26 완료),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시장 인가 후 공포·시행

【 별 첨 】 정관 개정 세부내용

정관 개정 세부내용

1. 개정사유

- 가.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 반영을 통한 노사의 경영성과와 책임 공유 제도화에 필요한 근로이사제의 도입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- 나. 반복되는 공공부문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는 안전업무 외주화를 이사회 의사결정사항으로 명문화하여 시민과 근로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< 근로이사제 도입 관련 >

가. 임원 정수 조정

- 종전) 7인의 비상임 이사 → 개정) 9인의 비상임이사
 - *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공사 등 : 근로자이사 2명
 - (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)

나. 근로자이사의 연임 절차 명시

- 연임의 경우라도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

다. 이사회 의장 선임 방법 변경

-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과 근로자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 호선

< 안전업무 외주화 관련 >

라. 이사회 의결사항 추가

- 이사회 의결사항에 “안전분야 사업의 외주화에 관한 사항” 신설

< 기 타 >

마. 부칙신설

- 제1조(시행일) : 공포일부터 시행
- 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: 이사회운영규정 중 일부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<근로이사제 도입 관련>

- 시장 방침 제165호('16.6.17) 「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계획」
- 서울특별시 ‘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’ 시의회 의결('16.9.9)

○ 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세부 운영 지침(안) ('16.9.21)

<안전업무 외주화 관련>

○ 서울시 공기업담당관-8578호(2016.7.27)

「투자·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」

나. 절차 : 이사회 의결,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시장인가 후 공포·시행

4. 개정사항

현 행	개 정
<p>제10조(임원)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7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1인의 감사를 둔다. < 단서 신설 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0조(임원)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<u>9인</u>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1인의 감사를 둔다. <u>다만, 비상임이사 중 2인 이내를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근로자이사로 둔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< 단서 신설 ></p> <p>②~③ (생략)</p>	<p>제11조(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<u>다만, 근로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근로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4조(의결사항)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1~15 (생략) 16. 기타 공단 운영에 ~ 인정하는 사항</p>	<p>제24조(의결사항)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1~15. (현행과 같음) <u>16. 안전분야 사업의 외주화에 관한 사항</u> <u>17. 기타 공단 운영에 ~ 인정하는 사항</u></p>
<p>제26조(이사회 의장) ①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. ② (생략)</p>	<p>제26조(이사회 의장) ①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<u>비상임이사와 근로자이사</u>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.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부 칙 (신 설)</p>	<p><u>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</u> <u>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이사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 <u>제3조(의장 및 회의소집)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u> <u>①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와 근로자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,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.</u> <u>제7조(기능) 중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u> <u>16.안전분야 사업의 외주화에 관한 사항</u></p>